

협약서

인천항만공사(이하 “협업기관”)와 KOTRA인천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는 『2026 한·베 페스티벌 연계 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 (이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2026 한·베 페스티벌 연계 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 관련 “협업기관”과 “지원본부”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기간)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 (사업비의 사용 및 정산)

- ① “협업기관”이 “지원사업”의 진행을 위해 “지원본부”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는 금 25,000,000원 (금 이천오백만 원, 영세율 적용)으로 하며, “협업기관”이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에 출연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지원본부”에게 위 사업비를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사업비는 “지원사업”의 종료 후 “지원본부”가 “협업기관”에 사업결과 및 사업비 지출에 대한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협업기관”이 제3항의 검토과정을 거쳐 지급한다.
- ③ “지원본부”는 본 사업의 예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해야 하며, “협업기관”은 “지원본부”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결과 및 사업비 지출내역이 사업의 예산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재단”을 통해 제1항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4조 (사업의 내용) “지원본부”는 참가업체 선정, 배정 등 ‘2026 한·베 페스티벌 연계 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 참여 관련 사업지원을 수행하고, 사업 결과보고서를 “협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통보) “지원본부”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협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협업기관”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협업기관”과 “지원본부”는 상호 모두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의 해지) “협업기관”과 “지원본부”는 상호 사업수행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법령 및 규정의 준수)

- ① “지원본부”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대외무역법」 및 관련법령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이행 등) “협업기관”과 “지원본부”는 본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다만,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기관의 제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협력 이행에 적극 노력한다.

제10조 (비밀유지) “협업기관” 과 “지원본부”는 협력과정을 통해 인지한 상대기관의 업무내용이나 이와 관련되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언론공개 및 학술지 게재, 학술회의 등에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서는 “협업기관”과 “지원본부”가 본 협약서로 협약을 맺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직인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4월 13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 경 규



KOTRA인천지원본부
본부장 김 삼 수

